

광주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57963 판결 [부동산압류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57963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250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순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소영

변론종결 2022. 4. 8.

판결선고 2022. 4. 22.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250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순천시 C 대 189㎡, D 대 42㎡, E 대 43㎡의 2016. 9. 27. 압류기입 등기된 부동산의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9호증 내지 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흠, 판사 김효진, 판사 김영아